대구광역시 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

검토보고

1. 검토 경위

- 발의일자: 2023. 6. 1.
- O 발 의 자: 이주한 의원 외 2명
- O 회부일자: 2023. 6. 7.(의안번호 제454호)
- 검토기간: 2023. 6. 7. ~ 6. 13.

2. 주요 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정의,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(안 제1조~제3조)
-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~제5조)
- 정신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O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8조)

3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제4조, 제12조, 제44조, 제50조, 제64조
- **나. 입법예고**: 2023. 6. 8. ~ 6. 13.(접수된 의견 없음)
- 다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4. 검토 의견

가. 법적 근거 및 타당성

○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(약칭: 정신건강복지법) 제50조의 응급입원과 관련하여 지역의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체계 안에서 타당하게 구성된 것으로 판단됨.

나. 조문별 주요 검토 사항

-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, 용어 정의,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간결하게 규정하여 조례의 기본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들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보이며,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 상황을 행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협의체구성 및 운영, 정신의료기관 지정,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 형성에 필수적인 요소를 두루 갖춘 것으로 보임.
- 안 제8조는 본 조례안을 통해 구축될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재정적 조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, 「정신건강복지법」 제64조에 따른 지원 외에 응급입원 비용,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및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등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.

다. 종합 의견

○ 보건복지부의 〈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〉에 따르면,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나 정신장애로 진단받은 사람 중 12.1%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, 성인의 10.7%는 평생 한 번 이상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하여 1.7%가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하므로 우리주변에서 정신건강 위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할 수있고 본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한 지점도 여기에 있는바, 집행기관에서는 본 조례안 의결 후 시행 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미비점을 주의깊게 관찰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될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[참고자료]

□ 정신질환자 응급 대응 현황

(이주한 의원 요구자료)

- **대구광역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처리 현황** (단위: 건)
 - ▶ 2022년 1월 ~ 12월

합계	중구	동구	서구	남구	북구	수성구	달서구	달성군
1,006	39	115	132	105	108	107	321	79

▶ 2023년 1월 ~ 2월

합계	중구	동구	서구	남구	북구	수성구	달서구	달성군
213	15	30	28	21	27	28	53	11

○ 대구광역시(서구) 정신질환자 관련 응급출동 현황 (단위: 건)

구분	2021년	2022년	비고
과거 이력자	175	240	
신고 시 증상	58	94	

[※] 해당 자료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 중 서부소방서 출동에 한정된 수치임.